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8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은인)
담 당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711-0835-9)
제 목 의료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항의 성명서
날 째 2000. 12. 8. (총 2 쪽)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보호제도 개혁에 나서라!

12월 5일 의료보호법 개정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려 정부 개정안(의료급여법)과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의원입법안(기초건강보장법: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 병합심리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 폐지를 전면 거부하였다. 현 정부가 국정 이념으로 내놓은 생산적 복지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서민의 복지를 대변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조차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무소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2종 법정 본인부담금 폐지시의 예산이 과잉추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에 임하여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 폐지시 추가소요예산액을 6,500억으로 추계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종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폐지조차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추계는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이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1종 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을 같다고 가정하고, 심지어 전체 소요 진료비 중에서 지방정부 부담금(23.8%)까지도 예산추계액에 포함시키는 등 과잉 추계되었다. 보건복지부조차도 이를 인정한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의료보호법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다는 미중족 의료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2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입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이 폐지되어도 진료시에 각종 비급여 항목이 많아 1종 환자라 하더라도 총 진료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2종 법정 본인부담금을 없애더라도 도덕적 해이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도덕적 해이"란 의료이용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의료이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충족 수요가 문제가 된다는 점은 누구라도 알만한 사실이다.

가난한 이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노동력을 상실하여 영구적인 가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금을 물게 하여 병원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과연 보건복지부의 발상이란 말인가.

법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 폐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의료보호 2종 법정 본인부담금을 존치하는 정부법안을 철회하라!

1. 의료보호환자의 차별의 근원이 되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금 적립금을 조성하는 명시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1. 보건복지부는 서민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걸맞도록 의료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2000. 12. 8.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타,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서울YMCA,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